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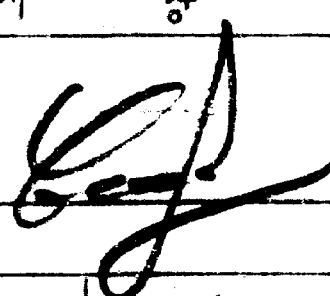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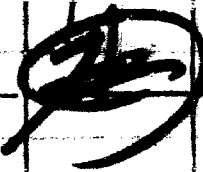


하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범무 181.7	(전화번호 3 0 2)	권장규정	공 권
제외기관		제 1 부 시 장		시 부 장
시행일자				
보 존 년 한				
보 조 거 관	기획관리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훈령제373호 제2부시장 시안국장 부내 인민시장통 개양2과장 </div>	
	범무담당관			
	법제계장			
기안책임자	김 문 용	73. 9. 21		
경 유 수 신 완 조	과 안 참 조	발 신		봉 지
제 목	서울특별시무이거건물정미대책심의외규정 제정			
	(제 1 안) 내부 견 제			
	법률 제2581호 (73. 3. 5)로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래에는 단순히 무이거건물정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하여 오던 현지 분양건을 개발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사업의 안정적인 종안과 실시에 관한 관계과장들의 사전 심의기구			
	설치방안의 일환으로써 연행 무이거건물의 원거 및 그 대책수립을 목적으로			
	한 무이거건물개발위원회의 기능을 보장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무이			

결재
1973102
시장실

제
시안국장

0201-1-8A

148mm x 229mm 백상지 400/㎡

1969. 11. 10. 승인

0663

가건물정리대책심의회규정을 별안과 같이 지정하거 합니다.

(제 2 안)

수신 : 문화공보실장

발신 : 법무담당관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서울특별시사무기가건물정리대책심의회규정을 별첨 공포안과 같이
공포하고자 시보 게재를 의뢰하니 게재 조치하기 바랍니다.

첨부 : 훈 령 1. 부 끝.

(훈 령 안)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대책심의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73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리대책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무허가건물의 합리적인 정리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대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1)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무허가건물의 정리에 관한 기본 계획
2. 현금 보조 철거 및 이주 정착에 관한 사항
3. 철거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
4. 주택개량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5. 개량지구 및 정착지구 내의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의 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주택행정과장, 단속과장, 개량1과장, 개량2과장, 주택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행정과장, 관제과장, 녹지과장, 구획정리1과장, 시설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급수과장 및 시정개발담당관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도 한다.

제4조(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리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외소집과의사) (1)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지명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이 따른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전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명하고 일시, 장소, 안건등을 정하여 참석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1)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 결과 채택된 사항은 시책이 적극 반영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계량1과 계획계장과, 계량2과 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서행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3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공정 제309호 (70. 9. 1) 서울특별시무허가건축물 대책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 정 이 유

법률 제2581호 (73. 3. 5)로 "주변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래에는 단순히 무허가건물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오던 현저 불량건물 개량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사업의 합리적인 방안의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전 심의기구를 설치 현행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그 대책수립을 겸한 무허가건축물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보강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대책 심의회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무허가건축물대책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무허가건축물의 종합적인 장기대책을 심의하여 그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시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무허가건축물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무허가건축물의 집단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2. 철거민의 정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철거민 구호에 관한 사항
4. 불량건축물 개량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5. 기존 무허가건물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6. 무허가건물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파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1)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주택관리관이 된다.

(2) 위원은 법무과장, 관제과장, 주택개량과장, 사회과장, 보건1과장, 관리제2과장, 운수제1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제4조 (소집과심의회) (1)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 (건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단속계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개량과 직원중에서 시장이 명한다.

제7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197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3. 12)

이 규정은 1971년 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9. 16)

이 규정은 1972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개량이 811-94 (264)

73.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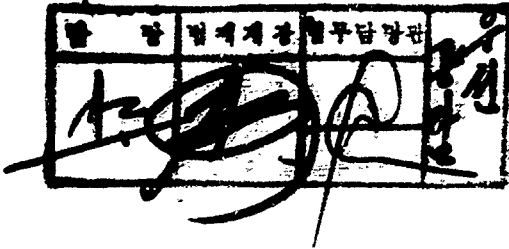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자치법규 개정 의뢰

1. 1972. 9. 16자 훈령 제 360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대량취역원칙 규정을 별첨 개정안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및 개정 이유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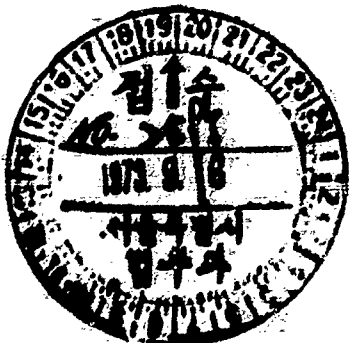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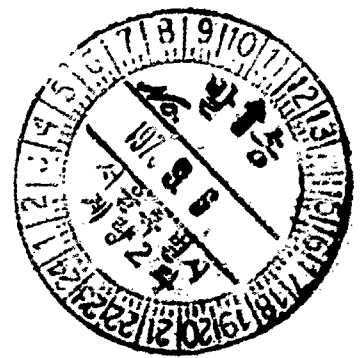


첨부 : 1. 개정안 3부.

2. 개정 이유서 3부.

3. 조문 대비표 3부.

4. 기마 참고자료 3부. 끝.



개 양 2 과

Handwritten signature or initials.

계 정 사 용

1. 73. 3. 5자로 주택개발 촉진에 관한 ~~합시 조처법~~^의 개정 공포령에 따라 종래 무허가 건물 정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오던 현지개발사업을 상기 특별법에 의거 완전히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게되며. 동 특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 방안과 절차가 도시계획법, 건축법, 구획정리사업법 등을 준용토록 되어있어 구체적인 사업시행과정 및 관계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난점이 예상되어 관계 실무국장들의 즉 넓은 의견 교환과 검토 조정이 필요함.

2. 현행 규정은 주택구 기구 계획으로 위원장, 위원 및 간사등 명칭이 상이하므로 계정이 불가피함.

계 정 안

0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리 대책 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택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과 무허가 건물의 합리적인 정리방안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리 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 2조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기존 무허가 건물 정리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현금보조 절거 및 이주정착에 관한 사항.
3. 절거된 구호에 관한 사항.
4. 주택개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5. 개발지구 및 정착지역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
7. 관계 법규 적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3조 (구성) (1)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된다.

(2) 위원은 주택행정과장, 관계계장, 단속과장, 계량 1과장, 계량 2과장, 주택건설과장, 법무담당관, 도시계획

과장, 도시행정과장, 관제과장, 녹지과장, 구획정리
1과장, 시설관리과장, 사회과장, 금수과장, 시정개발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위원장의 직
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안건에 따라 참석위원을 지명한다.
- (2)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소집과 심의)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위원(지방)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등을 정하여 참석위원에게 통보한다.

제 6조
(건의)

- (1)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한다.
- (2) 시장에게 건의하여 채택된 주요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마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제 7조
(사무)

-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2) 간사는 지방 1과 기획과장, 지방 2과 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8조 위원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
(시행세 처 위원장이 정할수 있다.
칙)

부 칙

이 규정은 197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3. 12)

이 규정은 1971. 3.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9. 16)

이 규정은 1972. 9.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9.)

이 규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 례 대 비 표

조 항	현 조 례	개 정 안
국정 명칭	서울특별시 무이거 건축물 대책위원회규정	서울특별시 무이거 건물 정비 대책위원회의 규정
제 1 조 (목 록)	무이거건축물의 통합적인 정비 대책을 심의하여 그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시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무이거건축물 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이 규정은 주택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과 무이거 건물에 관한 법적 권익방안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무이거 건물 정비 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 2 조 (리 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무이거건축물의 집단정거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거민의 정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정거민 구호에 관한 사항.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기존무이거건물 정리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언급 보조 정거 및 어부정후에 관한 사항.

조항	연 조 분	개 정 안
	4. 불량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5. 기존 무허가건물 정리계획에 관한사항. 6. 무허가건물 양성과 업무에 관한사항. 7. 기바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첨거민 구호에 관한사항. 4. 주택개량 기본계획에 관한사항. 5. 개량지구 및 정주지구 내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 7. 관계 법규 적용에 관한사항. 8. 기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3조 (구 성)	(1)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주택관리관이 된다. (2) 위원은 법무과장, 관제과장, 주택개량과장, 사회과장, 보건 1과장, 관미제 2과장, 운수계 1과장, 시설키과장이 된다.	(1) 위원장은 주택과장이 된다. (2) 위원은 주택행정과장, 관제과장, 단속과장, 개량 1과장, 개량 2과장, 주택건설과장, 법무담당관, 도시계획과장, 도시행정과장, 관제과장, 복지과장.

조항	현 조 문	개정안
		구 획정리 1과장, 시설관리과장, 사회과장, 급수과장, 시정개발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직무 (신규)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안건에 따라 참석 위원을 지명한다. (2)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소집과 성취)	(1)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위원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지명)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3)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참석위원에게 통보한다.

조	항	현	조	문	개	정	안
제 5조 (건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 건의한다.	
					(2)	시장에게 심의하여 채택된 주요 사항은 사후에 적극 반영하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제 6조 (서무)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단속 계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계장과 직원중에서 시장이 명한다.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계장 1과 계획계장, 계장 2과 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과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7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수 있다.	

조항	변조문	계정안
부칙	<p>이 규정은 197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3. 12)</p> <p>이 규정은 197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9. 16)</p> <p>이 규정은 197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1973. . .)</p> <p>이 규정은 197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p>

住宅改良促進에 關한 臨時措置法 및 同施行令

서울 特別市

0680

住宅改良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

(1973年 3月 5日)

法律才 2581号

才1條(目的) 이 법은 住宅改良을 促進하기 爲하여 都市計画法에 依한 再開發事業에 關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都市의 健全한 發展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才2條(再開發區域의 指定) ①建設部長官은 才3條에 規定된 要件에 該當하는 地區를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道知事라 한다.)의 申請에 依하여 住宅改良을 爲한 再開發區域을 都市計劃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建設部長官이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住宅改良에 關한 再開發區域의 指定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廣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才1項의 規定에 依한 再開發區域의 指定은 住宅改良을 爲하여 必要한 最少限의 範圍 안에서 都市機能을 阻害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才3條(再開發區域 指定의 要件) 住宅改良을 爲한 再開發區域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地區에 對하여 이를 指定한다.

1. 이 법 施行日 現在 建築法 其他 關係法令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그 基準에 未達한 建築物이 있는 地區

2. 住宅改良事業을 施行하기 爲하여 撤去民을 収容하였거나 収容하기 爲한 地區

才4條(再開發事業의 施行) ①住宅改良을 爲한 再開發事業의 施行에 關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建築法才33條의2 및 同法才33條의 3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住宅改良을 爲한 再開發事業施行者는 災容 또는 衛生上의 장애를 防止하거나 住宅改良을 爲한 再開發事業에 依하여 造成된 空地 및 建築施設의 合理的인 利用을 圖謀하기 爲하여 管理處分計劃에서 過少土地 또는 建築物에 對하여 分讓을 하지 아니할 것을 定할 수 있다.

才5條(國公有地의 無償讓與) ①才2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再開發區域안 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中 1972年 12月 31日現在 無許可 建築物이 있거나 無許可 建築物의 撤去費用 取容한 地區안 의 土地는 그 再開發區域의 指定에 關한 都市計劃의 決定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從前의 用途가 廢止된 것으로 보며 國有財産法 地方財政法 其他 國公有財産의 管理 및 處分에 關한 關係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該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讓與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讓渡契約을 締結하여 代金의 一部를 受領한 土地에 對하여는 그리 하지 아니하며 地方自治團體에 讓與된 土地中 公營農年金特別會計에 屬하는 土地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年金 特別會計에 補償하여야 한다.

②才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道路, 鐵道, 其他 公共施設用地는 地方自治團體에 讓與되지 아니한다.

③住宅改良에 관한 再開發事業의 施行으로 才2項의 施設에 같은 하는 施設이 設置된 때에는 從前의 施設用地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讓與된다.

才6條(再開發事業費의 造成充當 等) ①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讓與된 土地의 使用收益 또는 処分으로 부터의 收入은 住宅改良을 爲한 再開發事業目的 以外의 用途에 이를 使用할 수 없다.

②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讓與된 土地의 管理處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才7條(事業施行에 對한 監督) 建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住宅改良을 爲한 再開發區域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事業의 變更 其他 必要한 措置를 그 事業施行者에게 命할 수 있다.

1. 再開發區域指定當時에 承認된 事業計劃에 依한 再開發事業을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建設部長官의 承認없이 變更 施行한 때

2. 才5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讓與된 土地를 再開發事業目的 以外의 用途를 爲하여 處分한 때

3. 其他 公益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才8條(都市計劃法의 準用) 住宅改良을 爲한 再開發區域이 指定된 때에는 都市計劃法才55條의 規定을 準用하며 이 境遇 再開發區域은 都市開發予定區域으로 본다.

-4-

부령(施行令)의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여 1981年 12月 31日까지 그 効力を 가진다.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개발구역의 지정신청) ①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명칭·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개발사업 계획의 개요서
2.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연조사서
3. 지적도 사본

② 건설부장관은 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재개발사업의 명칭
2.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4. 재개발사업의 개요

③건설부장관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법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된 토지의 관리청에 당해 토지의 지적도 사본을 첨부하여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3조 (무상 양여된 토지의 등기이전 절차) ①법제 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무상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재개발구역 지정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당해 관리청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 4조 (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상) 법제 5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의 토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 지급할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에 보상금의 금액은 시가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 5 조 (양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양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의 지정 당시 실제로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다음 각호에 기재한 시설용지를 말한다.

1. 도 로
2. 철 도
3. 광 장
4. 계 도
5. 학 원
6. 항 만
7. 녹 지
8. 공 원
9. 유원지
10. 시 장
11. 수 도
12. 하수도
13. 유희저장 및 증유시설
14. 지방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제 6 조 (재개발구역 지정의 취소) ①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
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관한 등기소에 이에 필요한 등기를 속탁하여야 한다.

②번째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에 취소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토지가 제3자에 양도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특별회계 재산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양도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납입액, 납입시기, 양수한 제3자로 부터의 미납된 양도대금의 수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재산의 원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 198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관계법규 운용)

- 도시계획법 제 55 조

- 건축법 제 33 조의 2

- 건축법 제 33 조의 3

도시계획법 제 24 조~제 28 조

도시계획법 제 33 조~제 53 조

도시계획법 제 86 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전부

지방세법 제 216 조

지적법 제 10 조~제 19 조

지적법 제 28 조~제 31 조